

보 건 복 지 부 시 정 요 구

제 목 긴급의료지원 비급여 진료비 심사청구 소홀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내 용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의료지원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라 본인일부 부담금 외에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용(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진료비)이 요양(의료)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급여비용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지침 「긴급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2013. 2. 1.이후 긴급의료지원금액 중 비급여진료비의 지원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보장기관(시·군·구청장)이 긴급의료지원 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필요서류를 갖추어 요양기관에서 지불한 비용(비급여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진료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여 과다하게 지불된 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횡성군 등 5개 군에서는 긴급의료지원대상자 중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진료비 지원금액 150만원 이상인 104건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과다 징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황성군수, 영월군수, 평창군수, 정선군수, 인제군수는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 15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과다 징수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 등의 조치를 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